

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기관명		
	기관소재지		
	(전화번호 :)		
검사장소재지	주소		
	(전화번호 :)		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등기부등본 2.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. 검사장, 시설·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		
처리절차				
신청서 작성	→ 접수 (민원실)	→ 검토 및 자격요건 심사	→ 결재	→ 지정서 교부
신청인		처리기관: 국립환경과학원(생활환경연구과)		